

## 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지원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사업개요 >

#### □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중 2개 사업(단계별\* 1개)의 연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1단계) 중소기업 R&D역량제고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 (2단계)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R&D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선정평가에서 연계할 2개 사업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1단계 최종평가 시점에 2단계 연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연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 사업목적

-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제로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중소기업 R&D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신규) : 10개 과제 내외, 1,400백만원

□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공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 (예시) 디딤돌(1단계)+TIPS(2단계) → 최대 3년 간 6.2억원 이내 지원 가능
- 시장대응형(1단계)+구매조건부(2단계\_공동투자형) → 최대 5년 간 17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상사업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단계별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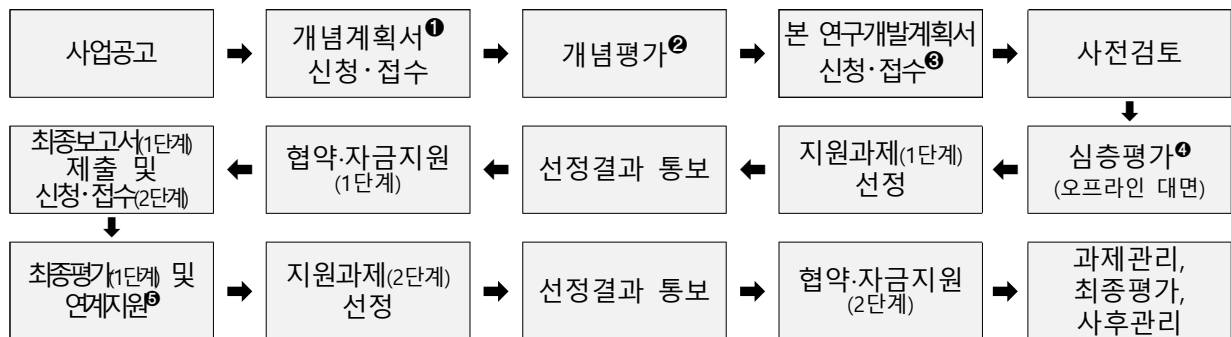
< 단계별 연계 가능 사업 >

1단계		2단계		창업성장 기술개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TIPS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	구매연계형 일반·조달혁신· 소부장	공동투자형 일반·소부장
R&D역량제고	맞춤형 기술파트너	○	X	○	○	○	○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	X	○	○	○
		서비스R&D	○	X	○	○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 대응형	일반	X	○	○	○	○

\* 1단계 신청시 1·2단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만 최종선정, 단 2단계 사업으로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구매조건부)을 희망하는 경우 2단계 협약전까지 구매동의서 등 제출 유예 (예시) 디딤돌(1단계)+TIPS(2단계), 최종선정 확정 전까지 TIPS운영사기관으로부터 투자 및 추천확정 필요 시장대응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2단계 협약 전까지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 제출 필요

\*\* 현재 수행 중인 과제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1단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과제임

□ 추진 표준절차 및 평가 방법



\* 지원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기 표준절차의 일부과정이 조정·적용될 수 있음

- ①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쪽 이내로 작성
- ② 기술개발의 목표, 필요성, 우수성, 연계 필요성, 연계 사업 적정성 등 평가
- ③ 본연구개발계획서는 분량제한없이 작성
- ④ 토론회 평가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기업역량 등 평가
- ⑤ 최종평가(2단계 협약시점의 재무건전성 검토)를 토대로 2단계 R&D 연계 지원

□ 공고기간: 2023. 6. 20.(화) ~ 7. 20.(목)

\* 온라인(SMTECH)접수기간: 2023. 7. 7.(금) ~ 7. 20.(목) 18:00까지

## 1. 지원개요

□ 지원규모 : 1단계 신규과제 10개 내외, 단계별 연계사업에 따름

\* (예시) 디딤돌(1단계)+TIPS(2단계) → 최대3년, 6.2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시장대응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5년, 17억원 이내 신청 및 지원

□ 지원유형 : 세부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보유하고,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2단계 사업의 자격요건을 모두 해당되어야 함. 단, 2단계 구매조건부를 희망하는 기업은 2단계 협약 전까지 구매동의서(투자동의서) 제출 유예

○ (공동연구개발기관) 기술개발 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기술개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1단계 사업 중 R&D 역량제고(맞춤형 기술파트너)는 사업 특성에 따라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역할로 과제 수행(23년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시행계획 공고 참고)

□ 연계사업

○ 1~2단계별 3개 세부 사업 중 단계별 참여를 희망하는 내역 사업

- (1단계) 중소기업R&D역량제고(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창업성장 기술개발(디딤돌),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시장대응형) 중 택1

- (2단계) 1단계 사업에 따라 지정된 연계 가능 사업 확인 및 신청

\* 1단계 사업별 - 2단계 연계 가능 사업 참조

\*\* 2단계 연계 사업은 1단계 최종평가 및 연계지원 시점의 2단계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단계 사업별 연계 가능 사업 >

1단계 사업		2단계 신청 가능 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기업R &D 역량제고 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연계형(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일반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확대형(민간투자연계)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사업	구매연계형(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서비스R&D)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연계형(일반, 조달혁신, 소부장), 공동투자형(일반, 소부장)

\* 상기 표에 기재되지 않은 조합의 연계 신청은 불가함

\*\* 1단계 세부사업 중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23년 기준)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중장기 R&D 전략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1단계 기술개발을 선별 지원하고 종료 후 연계평가 및 2단계 지원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최대 80%이내\* 지원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 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023. 2. 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완화하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2단계 연계사업에 대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중 및 현금비율은 2단계 연계지원 시점 기준을 적용**

\*\*\* 연계지원 여부 판단 시점(연계평가)까지 2단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 충족 시 연계 불가. 사업운영 여건에 따라 2단계 자격요건 일부 변동 가능.

### ①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공모 방식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3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공모 방식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최대 1년, 1.2억 (연차별 최대 0.6억 이내)	80% 이내	자유공모
	TIPS (2단계만해당)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 ③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분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공모 방식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시장대응형 (일반,1단계만해당)	최대 2년, 5억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80% 이내	품목 지정
	시장확대형 (민간투자연계형)	최대 2년, 6억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 ④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2단계만 해당)

구분	내역사업		지원규모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개발비 비중			지원대상 수요처 및 투자기업	공모 방식
				정 부	주 관	수요처 및 투자기업*		
구 매 연 계 형	일반 · 조달 · 소부장	구매 동의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자유공모
			최대 2년, 5억원		10% 이상 (현금 1% 이상)	10% 이상 (현금 1% 이상)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일반 · 조달 · 소부장	구매 계약서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정부, 국제기구	자유공모
			최대 2년, 5억원		20% 이상 (현금 2% 이상)	-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 정부, 지자체	
공 동 투 자 형	일반과제, 소부장		최대 3년, 12억원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1:1)	대기업, 공공기관 등	자유공모
			80% 이내		20% 이상 (현금 2% 이상)	정부출연금 대응 투자(3:2)	중견기업	

- ①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에 관리·운영하며, 다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대·공기업 1:1, 중견 3:2)하는 투자계획 필요
- ② 조달혁신(수요처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10억원 한도 지원가능, 군 과제의 경우 3년까지 지원가능(지원한도는 동일)

## 2.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공동)
- (내역사업별 자격) 연계희망(신청) 사업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지원 자격을 충족
  - \* 신청·접수시 1·2단계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단, 2단계 구매조건부사업은 희망하는 경우 구매계약(구매동의서) 및 투자동의서는 2단계 협약전까지 유예
  - \*\* 재무여건은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검토하며 2단계 협약시 재무여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지원제외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중소기업 R&D 역량제고사업	맞춤형 기술파트너	공통자격에 해당시 * 개념평가 이후, 공학컨설팅센터에서 해결의뢰서를 검토하여 기술전문가를 매칭하고, 기술전문가와 중소기업이 함께 "기술애로 해결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제출 **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되, 선정 시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공학컨설팅센터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역할 수행)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시장대응형 (일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기업 중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內 기술을 보유하고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시장확대형 (민간투자형)	(민간투자연계) 최근 3년 이내 민간투자 5억/10억원 이상 투자 받은 중소기업 - (일반투자) 민간투자 혹은 기보 보증연계 투자를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 받은 기업 중 4R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스케일업 팁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서 최근 3년 이내 先 투자(10억원 이상)를 받아 추천한 제조하드웨어 분야 기술집약형 중소벤처기업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창업 후 7년이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중 아래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① 창업기획자 등 TIPS 운영사로부터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기업 (2인 이상으로 구성) *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 가능(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필요) ②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 이상* 보유 * 추천마감일 기준이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창업기업의 지분이 60% 이상(운영사 지분 30% 이하)을 유지
	디딤돌 (여성참여활성화, 서비스R&D)	(공통자격)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중 <b>유형별 세부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기업</b>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중소벤처기업부 R&D를 한번도 수행하지 않은 창업기업. 단, 중소기업R&D

세부사업	내역사업	지원 자격								
		<p>기획지원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산학연 Collabo R&amp;D(예비연구), 네트워크형 1단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은 수행 이력에서 예외로 함 (여성참여활성화)</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신청자격</th> </tr> </thead> <tbody> <tr> <td>여성기업</td> <td>「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sup>1)</sup></td> </tr> <tr> <td>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td> <td>최근 3년<sup>2)</sup> 이내 채용된 경력단절여성<sup>3)</sup>이 근무 중인 기업</td> </tr> <tr> <td>여성연구원 비중 20% 이상</td> <td>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주관연구개발기관(채용예정은 제외)</td> </tr> </tbody> </table> <p>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서'로 확인하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확인서  2)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3)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p>	유형	신청자격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sup>1)</sup>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최근 3년 <sup>2)</sup> 이내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sup>3)</sup> 이 근무 중인 기업	여성연구원 비중 20% 이상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주관연구개발기관(채용예정은 제외)
유형	신청자격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여성기업 <sup>1)</sup>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최근 3년 <sup>2)</sup> 이내 채용된 경력단절여성 <sup>3)</sup> 이 근무 중인 기업									
여성연구원 비중 20% 이상	신청과제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 비중이 20% 이상인 주관연구개발기관(채용예정은 제외)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연계형	<p>수요처의 '구매계약서' 또는 '구매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공동투자형	<p>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미만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의 재무결격 예외적용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단계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적용
  -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입력정보와 신청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은 [붙임1~2] 참고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 3. 추진절차 및 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추진 표준절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신청기업,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원신청과제의 특성에 따라 상기 표준절차의 일부과정이 조정·적용될 수 있음

#### □ 선정평가 방법

- (사전검토)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1] 참고
- 개념평가 실시 (7월 말)
  -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개념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의 적정성 및 연계성 평가



- 평가결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목표 수(10개)의 2배 수를 '본 연구 개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평가

\* 개발목표 및 내용, 개발필요성 및 우수성, 사업연계 필요성 등을 5쪽 이내로 작성

$$\text{평가결과} = \frac{\text{개념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개념평가 표 >

지표		지표 배점	
기술 개발 적정성	개발목표 및 내용	-	26
	개발 필요성	정부지원	3
		정책부합	2
		시장수요	11
	개발 우수성	혁신성	6
		차별성	4
		파급력	8
기술 개발 연계성	연계 필요성	-	25
	연계사업적정성	-	15

- '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통보일로부터 최대 2주 이내** 양식에 따라 본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토론식 심층평가 실시 (8월 중)

- 산·학·연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심층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식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심층평가 전 연구개발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후 기업에 사전질의와 기업 답변을 확인하여, 심층평가 시 토론방식으로 평가 진행

$$\text{종합평점} = \frac{\text{심층평가점수 합계}}{\text{평가위원 수}} + \text{가점} - \text{감점}$$

\*\* 가점 및 감점은 심층평가 종합평점에 한하여 반영

**< 심층평가 지표 >**

구분	평가지표	평점
기술성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15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20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5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가능성	10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1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연구개발역량	15
	연구윤리	10
자금집행계획		5

-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과제는 '추천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되며 종합평점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

○ **연계평가** (1단계 개발기간 종료 1개월 전 ~)

- 1단계 사업 종료에 따른 최종평가와 2단계 후속 지원을 위한 연계 평가를 결합하여 운영

- 1단계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등을 근거로 개발 이행 여부, 2단계 개발 후 시장 성공가능여부, 연속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2단계 연계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 **가점 및 감점사항**

○ (가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분야별 최대 가점을 고려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단, 공통가점 중 성과창출 강화에 대한 가점은 최대 우대 가능한 가점 외 별도 적용)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 가점 >**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 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2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2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법」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분야별 최대 가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심층평가 반영)에 대한 인정은 본 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가능, 이후 제출 또는 요청 불인정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 4. 신청기간 · 방법 등

### 개념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 · 접수기간: 2023년 7월 7일(금)~7월 20일(목), 18:00까지
- \* 개념계획서 접수 이후 일정 :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안내(전자알림시스템)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2023년 사업연계형 기술개발지원 시행계획 공고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00분00초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 개념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정각 까지

### (개념계획서 제출 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1] 참조

### (유의사항) [붙임2] 참조

### (작성메뉴얼) [붙임3] 참조

### (보안등급) 본 공고의 신청과제는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 5.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단계별 각 사업별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4-300-0551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SMTECH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http://pf.kakao.com/_llfqd)

[붙임1] 개념계획서 제출 방법 및 지원 제외사항

[붙임2]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지원 유의사항

[붙임3]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개념계획서 작성예시 및 품목